

#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5,136,558	10,954,097
일반회계	328,269,393	9,848,082
특별회계	36,867,165	1,106,015
공기업특별회계	11,484,674	344,54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484,674	344,540
기타특별회계	25,382,491	761,475
수질개선 특별회계	12,891,950	386,759
주택사업 특별회계	3,460,104	103,803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654,289	19,629
자활기금 특별회계	1,802,086	54,063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4,581,609	137,448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63,559	22,907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59,074	13,772
기반시설 특별회계	32,529	976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737,291	22,11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98,26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